

영등포구의회  
제20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2017. 5. 16.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檢 討 報 告

### 1. 경 과

의안 제211호로 2017년 5월 11일 유승용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 및 서울특별시 시책에 따라  
우리구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  
(안 제4조 ~ 안 제6조)

나.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등  
(안 제8조 ~ 안 제12조)

다. 녹색생활 운동 촉진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 ~ 안 제14조)

## 4. 참고사항

### 가. 관련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제54조(녹색건축물 확대),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온실가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제36조(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나. 예산조치 :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2017. 4. 5. ~ 4. 11.)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으로
  
- 조문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총 3장으로 나누어 1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내용은
  - 1) 안 제1장 총칙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국민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 2) 안 제2장에서는 저탄소 그린에너지 도시 구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추진, 쾌적한 지역사회의 조성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우리구의 지역실정에 적합한 기후변화 대응 대책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 3) 안 제3장에서는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실현을 위하여 기본원칙 및 실천의 교육·홍보사항 등을 규정하였음.

- 오늘날 전 세계는 기후변화의 위협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노출되어 해마다 기록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으며,

2017년 3월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 위주의 에너지 사용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1990년 대비 2013년 2.38배 증가하여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녹색생활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들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정책 및 서울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종합적인 추진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지방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20조에 따른 지방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제14조에 따른 녹색성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녹색건축물의 확대)** ① 정부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이하 "녹색건축물"이라 한다)을 확대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등급제 등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건축물에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건물에 대한 중장기 및 기간별 목표를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 소비를 최소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기준 및 허가·심의를 강화하는 등 설계·건설·유지관리·해체 등의 단계별 대책 및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사업과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신축되거나 개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력소비량 등 에너지의 소비량을 조절·절약할 수 있는 지능형 계량기를 부착·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의 건축물이 녹색건축물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적용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녹색건축물을 확대·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의 지원,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① 정부는 국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기업·민간단체 및 기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범국민적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조(온실가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s)와 과불화탄소(PFCs)는 별표 1과 같다.

**제28조(중앙행정기관등의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제27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을 전자적 방식으로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1.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와 그 이행계획

2.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3. 온실가스 배출 시설 및 에너지 사용 시설

4. 시설별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

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행계획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

③ 제2항에 따라 개선·보완을 요구받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한 이행계획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을 실행한 이행결과보고서를 전자적 방식으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행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공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4.11.19.>

⑥ 국무총리는 제5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장과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⑧ 중앙행정기관등이 해당 기관의 외부(다른 중앙행정기관등,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는 제외한다)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사업을 수행한 실적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의 이행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등이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정·기술 지원, 실태조사 및 진단, 자료 및 정보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2.12.2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행정기관등의 이행계획 제출 및 개선·보완,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이행실태 점검 및 사후조치, 목표의 공동 이행 및 외부 사업의 범위, 이행실적 인정·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신설 2012.12.27., 2013.3.23., 2014.11.19.>

**제36조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관리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 관리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개정 2016.5.24.>**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의 지원
2.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3. 제26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협조 지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4.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5.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

③ 국무조정실장은 센터의 효율적·체계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13.3.23., 2014.11.19., 2016.5.24.>

④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부문별 관장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관 부문별 전년도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를 매년 6월 30일까지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 2013.3.23., 2016.5.24.>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축산·산림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에너지·산업공정
3. 환경부장관: 폐기물
4. 국토교통부장관: 건물·교통(해운 분야는 제외한다)
5. 해양수산부장관: 해양·수산·해운·항만 분야

⑤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국제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에 관하여 검증을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온실가스 통계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계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4.>

⑥ 센터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변화·에너지·지속가능발전 등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인력, 정보 제공 및 분석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43조(녹색건축물의 확대 등)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6.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른 병원
7.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

**②** 법 제5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시의 개발 또는 도시 재개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시행되는 택지개발사업
2.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3.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기업도시개발사업
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혁신도시개발사업
5. 그 밖에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③** 정부는 법 제54조제8항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2013.3.23.>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주가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의 에너지 성능지표 점수 합계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결과 80점 이상인 건축물
2.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5. 그 밖에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자금의 지원 또는 조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제3장 지방소득세 특례는 제외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은 추가로 확대할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4.1.1., 2014.3.24.>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 2014.11.19.>
    1.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 2의2.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3.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정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4.12.31.>
  -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5.12.29.>
  -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3.3.23., 2014.11.19.>
  -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 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7.>
  -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하여 정하려는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 정한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규모 축소·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0.12.27., 2013.3.23., 2014.11.19., 2015.12.29.>
  -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12.27., 2015.12.29.>[제목개정 2010.12.27.]

##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7.>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3. "대한민국법인"이란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1)에서 같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소유하는 것
    - 1)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새로 발행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것
    - 2)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것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3) 외국투자가
    - 4) 3)의 투자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란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 등 외국인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8. "출자목적물(出資目的物)"이란 이 법에 따라 외국투자가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나. 자본재 다. 이 법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긴 과실(果實)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남은 재산
- 바. 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 상환액
-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아. 국내에 있는 부동산
-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9. "자본재"란 산업시설(선박, 차량, 항공기 등을 포함한다)로서의 기계, 기자재, 시설품, 기구, 부분품, 부속품 및 농업·임업·수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가축, 종자, 수목(樹木), 어패류, 그 밖에 주무부장관(해당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시설의 첫 시험운전(시험사업을 포함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10. 삭제 <2016.1.27.>
-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외국인에 대한 규정을 함께 적용한다. <개정 2016.1.27.>[전문개정 2009.1.30.]